



2022년 꿈장학 공모 안내



2022. 3. 11

* 멘토링 꿈장학 안내

1 취지 및 개요

- 꿈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멘토 선생님의 교육적·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함.

왜 멘토링장학인가?

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어른들의 애정과 관심입니다. 우리 재단은 장학생들이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**“멘토 선생님과 함께하는 꿈장학”**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2 지원 대상

-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(**중학교 2학년 ~ 고등학교 3학년**)
 - ※ 타 장학금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꿈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 지원 내용

- 학교급에 따라 12개월 동안의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함.
 - 중 학 생 : 1,800,000원(월 15만원 기준)
 - 고등학생 : 2,400,000원(월 20만원 기준)
- ※ 반드시 장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장학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(멘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).
- ※ 꿈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재단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열심히 노력하고 재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
4 장학생 선정 기준

- 학생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
-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연마하여 꿈을 이루려는 학생의 의지와 노력 정도
- 실질적인 성장 및 능력 개발에 대한 자기학습 및 진로계획의 내용
- 장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성장 가능성 정도
- 장학금을 함께 신청한 멘토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멘토링 계획
- (2021년 꿈장학을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) 전년도 재단 활동 내용 반영

5 꿈장학 멘토

1) 꿈장학 멘토의 자격

- 장학기간(2022.5월~2023.2월)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, 학교사회복지사, 학교전문상담사 중 장학생과 주기적인 만남이 가능하고, 가까이에서 장학생의 성장과정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의미함.
 - ※ 학생의 부모, 형제, 친인척 또는 보호자는 꿈장학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.

2) 꿈장학 멘토의 역할

- 정서적 지지
일상적 대화 또는 상담을 통해 장학생이 자신을 믿고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합니다.
- 장학금 활용 관리·지원
분기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장학생이 학습과 진로계획에 맞게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사용 및 기록을 지도·관리합니다.
- 진로 탐색 및 개발 지원
장학생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, 진로를 탐색하여 결정하며,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
- 학교생활 적응 지원
학교활동,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스스로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.
- 멘토링 활동 기록하기
멘토링 활동, 장학생의 노력과 변화 등에 관해 멘토링기록장에 기록하고, 장학생의 자기성장기록장 및 장학금활용기입장 관리를 격려하고 지도합니다.

3) 참고사항

- 한 명의 멘토는 한 명의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음.
-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장학생과 멘토 모두 재단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자기성장기록장(장학생)과 멘토링기록장(멘토)을 작성해야 하며, 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.
- 꿈장학생 및 멘토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것을 권장함.

* 2022년 꿈장학 공모 안내

1 신청기간 및 방법

1) 신청기간

- 2022년 3월 11일(목) ~ 4월 14일(금) 오후 6시까지

※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2) 신청방법



2 제출 서류

■ 온라인 신청서 제출

- 꿈장학 지원신청서 : 학생 입력
- 멘토링계획서 : 멘토 입력

■ 관련 증빙서류 제출

※ 온라인 신청 후 학생은 아래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
(제출방법 : 마이페이지 - '온라인 파일첨부')

1. 주민등록등본 1부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
2. 경제상황증빙서류 : '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' 또는 '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 등)'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
■ 경제상황증빙서류 안내

법정저소득층 : '기초생활수급자' 또는 '차상위계층' 에 해당하는 경우

· 아래 1 ~ 6 서류 중 **1개의 서류만** 제출

증명서	발급기관
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. 한부모가족 증명서 3. 자활근로자 확인서 4. 차상위계층 확인서 5.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)	· 주민자치센터 · 시·군·구청 민원실 [온라인 발급] · 정부 24 · 복지로
6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· 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 · 국민건강보험공단

기타 저소득층 : '법정저소득층'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· 아래 1 ~ 3 서류 **모두** 제출

증명서	발급기관
1.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,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	· 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
2. 부모(보호자)의 2022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※ 부모(보호자)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(보호자)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'증번호'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'납부자번호'가 일치하여야 함.	· 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
3. 부모(보호자) 모두의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※ 부모(보호자) 각각의 재산세(주택, 토지, 건물) 과세 정보(금액)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함. ※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, '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' 상에 '과세사실 없음'으로 기재되어 발급됨. ※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	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· 주민자치센터 · 시·군·구청 민원실 [온라인 발급] · 정부24

<유의사항>

- ▶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.
- ▶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▶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된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종료 후 열람이나 반환되지 않습니다.

3 선정 결과 발표

- 2022년 5월 말, 재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

4 문의처

- 전화번호 : (02) 727-5400 ~ 5401
- 홈페이지 : [정보마당] - [Q&A]